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71435 공사대금
원 고 최종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2길 6, 101동 106호 (양평동3가, 삼익플라
주아파트)
피 고 주식회사 천영건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서촌로 138, 씨동 1층, 2층 1호
대표이사 이향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
담당변호사 구본준, 유승진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피고는 2022. 7. 15.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능원초 모듈러교사 설치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22. 9. 3.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받았다. 2022. 9. 20. 위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이 114,157,73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되었다.

② 피고는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의 운영자인 조진권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행을 맡겼고, 위 조진권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이나 조진권이 동원한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직접 위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조진권이 지정하는 대로 주식회사 엠에스건설로부터 '우오수관 로보수' 명목으로 1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 한울 토건으로부터 '오배수관보수' 명목으로 3,500,000원, '오수맨홀 및 배수로 철거' 명목으로 1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주식회사 엠에스건설로부터 2022. 10. 7.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증이행각서(공사금액 92,042,710원)을 제출받았다.

④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이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25,000,000원을 청구하고,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의 대표이사인 조진권과 체결한 구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참여

한 원고도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사용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17,170,000원을 해당 인부들에게, 원고가 사용한 장비업체들에 대한 장비대금 13,380,000원을 해당 장비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19호증,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조진권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재는 피고가 지급)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금액은 60,000,000원 및 추가 공사금액 8,500,000원, 계약 외 설비 공사금액 3,500,000원 합계 72,00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한울 토건)에게 합계 13,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사용한 인건비 17,170,000원 및 원고가 사용한 장비대금 13,380,000원을 직불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27,950,000원(72,000,000원 - 13,500,000원 - 17,170,000원 - 13,38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7,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와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의 대표이사 조진권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조진권이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으로 사실상 하도급 받아서 수행하되, 공사대금은 조진권이 하도급받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진권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이나 조진권이 사용한 개별 장비, 자재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직접 위 업체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는 약정(일괄 하도급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금 지급도

위와 같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이 성립한 사실, ② 원고가 조진권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고 조진권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조진권이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및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을 원고의 조진권 또는 천영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원도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 선택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직접지급 청구는 피고가 조진권 또는 천영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

김용희 